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s://www.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2년 5월 현재 서술형 250건, 사례형 18건 등 총 268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웹페이지: https://www.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01

Q |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A | 영유아를 양육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3., 374쪽).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5만원	12~23	17만7천원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양육수당 지원서, 신청자의 신분증명서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07쪽).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 · 군 · 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07쪽).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제6항 및 별표 8).

-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02

Q | 5살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 **육아휴직의 대상 및 신청**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금지 및 복직**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03

Q |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되고, 언제 볼 수 있나요?

A |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관리해야하며,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절차에 따라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1]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2]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1) 친권자 · 후견인, 그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
2)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

▸ 이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4호).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및 운영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 참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2항).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요청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이 보고 또는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위의 1.~4.를 제외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 참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8).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및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04

Q | 부부가 모두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보육교직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을 경우 경찰서(국번없이 112),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의 자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따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132쪽).

▸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1. 아동에 대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및 감금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2.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누구든지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서(국번없이 112),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2호).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시설에 대한 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호).

▸ 이 경우 보육교직원과 같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한 행위로 봅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